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0684 판결 [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.

판결 선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[목록]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4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9.부터 2024. 8. 2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
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,
다. 2024. 5. 28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2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항, 다.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9.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[청구원인]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3. 일부 기각하는 부분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, 차임 등 최종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24. 4. 2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. 8. 2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김민지

별지